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제개편 방안

- 전북 장수군 재무과 -

1. 개요

1. 도입배경

취득세는 행위세 또는 유통세로서 거래단계마다 취득사실을 포착하여 그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의 경우 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이전까지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하였으나 1995.1.1부터 구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 규정에 의한 1가구 1주택 및 그 부속토지와 자경농지에 한하여 비과세하고 그 외의 물건에 대하여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어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그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가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후 10년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납부에 대한 납세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해 과세권 행사시 끊임없이 민원과의 마찰을 야기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수집의 한계 및 과세기술상의 어려움 때문에 자치단체별 운영현황이 상이하여 세제 운영상에 있어서 공평성 및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는 실정이다.

2. 추진경위

이하에서는 상기에서 설명한 기본 문제점을 토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운영상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합리적인 과세운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II. 상속의 개념과 상속취득세 운영 현황

1. 상속취득에 따른 납세의무

가. 상속에 대한 기본 정의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민법 제1005조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된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하게 되므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법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시키면서 다른 한편 상속인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로서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취득의 개념과 성격

지방세법 제104-6【취득의 의미】에서 법 제104조 제8호에서 「취득」이라함은 취득자가 소유권 이전등기 등록 등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 행위(잔금지급, 연부금 완납 등)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상 취득의 개념에서 사실상으로 취득행위는 논리 필연적으로 취득자가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만 있으면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즉,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므로 실질적 취득이 없다 하더라도 형식적 취득행위만 있으면 이를 과세객체로 하여 형식적 취득자에 대하여 과세한다는 것이다.

다. 지방세법상 상속취득에 대한 납세의무

지방세법 제120조【신고 및 납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그 납세의무자는 동법 제105조 제9항에 의거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과세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과세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상속취득세 운영 현황

가. 실무에서 상속취득세에 대한 처리 현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는 상속 취득세의 운영현황은 자치단체별로 상이하나 재산세(토지) 사망자 자료와 자치단체 제적관련 부서의 사망자 자료를 근거로 상속인에게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미신고 건에 대해서는 민법에 의거 상속인 각자가 지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은 분할에 의하여 협의가 가능하므로 협의결과에 따라 납세의무자, 세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협의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치단체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권자가 직권으로 고지한 부분은 추후 협의에 의한 등기시 환부 또는 추정하며, 과세제척기간이 지나 신고하는 부분은 과세불능으로 처리하고 있다.

나. 2007년 정부합동감사 처분 결과

2007년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감사 결과를 보면 전라북도 도내 14개 시·군의 경우 제척기간 내 미등기 상속재산 49,347건에 대한 사망자 및 상속인 조회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등 6,476건 774,943,910원을 과세누락한 사실이 있으며, 42,871건은 과세여부를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제척기간내 미부과 건수로서 이미 제척기간이 경과된 부분까지 추정한다면 그 누락분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III. 상속취득세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

1. 민법과 지방세법의 관계

가. 민법상 상속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장기미등기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①(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정하여진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의 적용을 받은 자로서 3년 이내에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계약이 아닌 원인인 상속으로 인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장기미등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위와 관련하여 상속인의 입장에선 당연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인 각자에게 균분 귀속되지만 상속인 상호간 협의의 되지 아니한 상태에선 상속인 각자의 취득재산을 명확히 확정할 수 없는 상태이다.

상속개시와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이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되는 것은 어디까지나 잠정적, 과도적 현상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분할에 의하여 공유관계가 해소가 된다. 이를 위해 마련한 제도가 상속재산의 분할이다.

즉,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생긴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유관계를 종료시키고 상속분에 따라 이를 배분함으로써 각자의 단독소유로 확정하기 위한 포괄적인 분배절차를 말하며, 이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언제든지 그 협의가 가능하다.

나. 지방세법상 상속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협의에 의한 분할의 경우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는 바 이는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다수이다.

공동상속인들 입장에선 협의에 의해 분할의 효과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선 잠정적으로 법정 상속분만 상속받을 수 있으며, 협의에 의해 지분의 변동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전등기를 아니한 상태에선 취득으로 보지 않아 취득세 신고·납부를 본의 아니게 해태하는 일이 발생한다.

반면 과세권자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사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부과외 제척기간을 기산할 수 있으며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등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과세권 행사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사망일로부터 5년 6개월 이내 그 조세채권을 확정시켜야 한다.

다. 민법과 지방세법의 관계

민법과 지방세법은 상속인에게 아래와 같은 괴리를 불러일으킨다. 상속인의 입장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이라는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의 이전이 있을 따름이지 상속인들의 편익의사를 가진 실질적 취득행위는 없으며 상속인의 의사는 등기부상 상속등기신청을 할 때 비로소 있게 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재산의 취득시기가 ‘상속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처럼 보게 된다.

그러나 취득시기를 상속등기접수일로 보았을 때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시에 법률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있는데도 취득세를 부과하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의 그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이라고 하는 배타적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에 비추어 타당하지 못하다.

또한 상속인이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사망 또는 결격 대상이 되어 상속재산을 대습상속하는 경우, 또는 상속인의 자의적 조세회피의도로 본위상속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지방세법상 취득의 시기와 과세제적기간의 한계에 있어서 그 조세채권을 확정시킬 때 과세권자는 상속인들의 이익과 관계없이 신고·납부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민법 제1009조 제1항에 의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 그 상속분을 균분으로 하여 과세권을 확정 시켜야 한다.

2. 상속취득세 운영현황에 따른 문제점

가. 행정력 낭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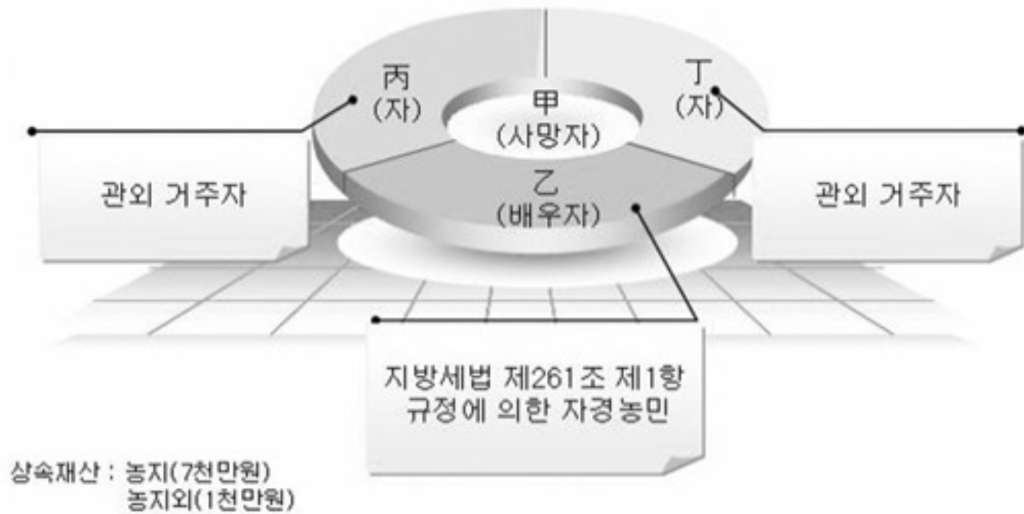
등기이전을 포함한 신고일 경우 등기절차에 의해 그 소유권이 형식적·실질적으로 확정이 되어 취득세 과세에 있어 별다른 무리가 없지만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신고이거나 미신고분에 따른 과세기관의 직권고지의 경우 그 취득은 재협의 절차가 가능하며 재협의 결과는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인정이 되므로 추후 등기시 협의결과에 따라 이미 부과된 과세처분 자체가 무효가 되어 환부 또는 추징을 해야 되므로 동일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중으로 행정처리를 해야 하며, 환부결정시에는 환부담당자에게 업무가 추가되므로 행정력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나. 조세채권 확정에 따른 과세기술상의 어려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의 운영은 지방세법 제110조 제3호에 의거 비과세 대상이 되는 납세의무자가 공동상속인에 포함될 경우 결정세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그 신고의무의 이행과 과세권을 확정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래 도식과 같은 상속의 경우,



상속유형별 취득세는

- A. 공동상속 : 1,000천원 (농지 중 乙지분만 비과세)
- B. 乙 상속 : 200천원 (농지만 전체 비과세)
- C. 丙 또는 丁 상속 : 1,600천원 (전체 과세)으로 결정된다.

위와 같이 협의결과에 따라 상속인별 과세현황이 상이하기 때문에 과세기술상 어려움이 있으며, 당초 이전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체 乙명의로 취득세만 신고한 후 추후 등기시점에선 丙 또는 丁에게 상속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이때, 등기시점이 제척기간 이내에 이루어질 경우 그 취득세는 추징이 가능하나 제척기간이 지나 등기하는 경우 부과권이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이나 경정을 할 수 없게 되어 납세자의 자의적 조세회피 의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

다. 세원누락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미신고분에 대하여 과세기관이 제척기간내 그 조세채권을 확정시키기 위해 서는 사망자에 대한 자료가 적기에 확보 되어야 한다.

현 자치단체별 운영현황을 보면 제적 관련부서의 사망자 자료를 기초로 하여 사망자별 재산내역을 토대로 그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제적 관련부서의 사망자 자료는 본적지가 당해 시·군일 때만 조회가 가능(제적 전산화작업으로 인해 타 자치단체 사망자 자료도 열람 가능하나 사망자의 본적을 미리 인지해야 함) 하며 재산세 사망자 자료는 연 1~2회 정도에 한하여 정비가 되므로 적실성 있는 과세자료 수집에 한계가 있어 세원누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상속인 각자가 균분 취득하는 공동상속으로 직권부과시 소액의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인 각자의 취득가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면세점에 해당하여 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다.

상속에 의한 취득세는 1995.1.1일부터 과세대상에 해당이 되나 그 과세제척기간은 5년으로 한정되어 있어 기간이 경과할수록 그 취득세 누락분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라. 상속포기분에 대한 취득세

2007년 6월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7년 1/4분기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3월 말 현재 우리나라 총가계 빚은 586조 5천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현 경제상황을 반영하여 해마다 개인파산신고 및 상속포기신고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상속포기 건에 대하여 취득세 문제점을 짚어 보고자 한다.

(1) 한정승인과 상속포기 개념

상속은 민법 제 1028조에 의거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조건으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즉, 적극적 재산(플러스 재산) 한도 내에서 소극적 재산(마이너스 재산)을 변제함을 조건으로 이는 우리 민법이 모든 개개인을 원칙적으로 권리의무의 독립된 주체로 보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부채는 피상속인이 해결할 것이지 상속인이 물려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얼마만큼 물려받을지 여부는 상속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다.

또한, 상속인은 민법 제1041조에 의거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포기를 할 수가 있다. 상속포기의 경우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2) 대위등기에 의한 취득세 신고

이와 관련하여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할 수 있는 채무자 명의의 등기

신청절차를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이름으로 대위등기(민법 제404조)를 할 수 있다. 채권자는 대위등기에 의한 명의이전과 동시에 채권확보 절차를 진행하는데, 이 경우 대위등기자가 대위등기 신청 시 과세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면 취득세가 부과된다.

(3) 법리상 상속포기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취소

대법원 판결에선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이상, 피전부채권의 전부채권자에게의 이전이라는 실체법상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 이는 집행채무자의 효력을 다투어 그 효력이 부정되기 이전에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져 확정된 경우에도 그러하다고 할 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실시된 강제집행의 실체법상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결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방세해석상 상속포기자에 대한 대위등기 또한 실체법상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그 취득세 또한 부과취소(내무부심사 97-356, 1997.8.27 ; 상속포기 후 채권자가 대위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취득세 납세의무 판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4) 사실상 취득자와 등기부상 취득자의 불일치에 따른 과리

상속포기를 한 대위등기 건에 대하여는 그 상속포기자에 대한 취득세는 부과취소되고 등기부상은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나 등기부상 명의인이 상속포기자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어 제2순위 상속인에게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 후 상속재산을 부정소비(상속채권자의 불이익으로 된다는 것을 알면서 소비)하는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하는바, 실제 상속포기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의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후순위 상속인들의 권리보전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상속포기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사례의 경우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그 관리에는 운영상 제약이 따른다.

IV. 상속취득세 운영 개선 방안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행 상속취득세의 운영은 매매나 증여 등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취득행위와 달리 그 과세권을 확정시키는 데 있어 상속인에게 상당한 안내와 이해를 요하며 과세권자 역시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상당한 과세기술을 요하는 바, 이에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여 원활한 세무운영을 기하고자 한다.

1. 과세제척기간의 확대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는 민법에 의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하고 민법 제187조는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에 의거 피상속인의 물권은 당연 상속인에게 귀속되지만 그에 대한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등기행위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당연 상속인에게 귀속된 물권은 등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사용·수익이 가능한바, 비록 지방세법이 민법의 사법상 개념을 차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의적 조세회피의도에 좌지우지되어 과세권을 행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세법은 민법과 달리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법률상 매매나 증여 등과 같이 취득원인일로부터 기한 내 이전을 해야만 하는 강행규정이 있다면 과세권자나 납세의무자 상호 그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이나 상속은 다른 소유권변동행위와 달리 이전절차상 상속인들 상호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이전시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서류가 요구된다. 때문에 등기일을 취득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은 무리가 따르므로 최대한 과세권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그 운영현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본다.

국세기본법상의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고 상속세 미신고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세법상의 과세제척기간은 포괄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무서의 상속세 과세자료를 근거로 한 취득세 과세는 이미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누락은 갈수록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방세법은 국세에 준용하여 그 운영을 하고 상속이라는 동일한 원인에 의해 발생한 행위이므로 지방세 또한 그 과세제척기간을 국세와 동일하게 운영을 하여 최대한 세원이 누락되는 일을 방지해야 할 것이다.

2. 과세자료수집의 개선

우리나라 연도별 사망자 수는 아래 표와 같다.

(단위 : 명)

구 분	2002	2003	2004	2005	2006
사망자 수	246,515	245,817	245,771	245,511	243,934

* 통계청 인구동태 건수 및 동태을 추이

제적 부서의 사망자 자료는 본적지 관할 시·군에서만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다. 매년 평균적으로 24만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외 본적을 가진 사망자에 대한 자료를 현재 파악하기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현실적으로 세무부서에서 관외 사망자에 대한 자료의 파악은 행정의 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때문에, 사망자자료를 적기에 확보하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이 요구된다.

지방세 전산 감사·조사 기법편람에서는 주민등록전산자료와 재산세 납세자료를 매치하여 사망자를 추출 후 제적등본을 확인하여 취득세를 부과하게끔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세무부서에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가지고 본적을 추적하는 데는 시간을 요하므로 본적지관할 제적부서 또는 법원에서 관할 사망자를 세무부서로 통보해주는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래 도식과 같은 절차에 의거 처리를 한다면 사망일로부터 3~4개월 안에 자료를 확보하여 상속인에게 기한내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인해 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관내에 부동산을 소유한 관외 사망자에 대한 자료도 파악 가능하므로 누락되는 세원을 방지할 수 있다.

3. 비과세 대상 사후 추정

등기이전을 포함하지 아니한 취득 신고일 경우 협의 결과에 따라 그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상기에서 설명한 바 있다.

상속은 협의에 의해 소급효과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당초 비과세 대상(甲)으로 납세의무가 확정인 후 추후 등기시점에서 과세 대상(乙)으로 상속협약이 이루어질 경우 乙의 취득행위는 甲으로부터

의 취득이 아닌 피상속인으로부터의 취득이기 때문에 등기시점이 과세제척기간이 경과한 시점이라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된다.

법리상 위의 절차는 하자는 없겠다고 할 것이나 자의적 조세회피로 이루어질 수가 있으며 갈수록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비과세 대상에 대한 추징규정이 요구된다.

지방세법의 비과세·감면은 국가정책적 목적 등으로 수혜혜택을 주나 조세형평성 유지와 감면제도의 기득권화 방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비과세·감면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경우 또한 비과세시점으로부터 유예기간 이내 등기이전에 대한 강행규정을 두어 과세권을 유보시킨 후 유예기간 이내 등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변동을 의려, 비과세 받은 부분을 추징하여 그 비과세 취지에 적합하도록 운영을 해야 할 것이다.

4. 상속포기건에 대한 법원의 직권 등기 말소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상속포기가 수리가 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상속포기인 명의로 대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위 상속등기는 말소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는 신청자가 없어 상속포기인 명의로 등기부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위의 경우 가정법원에서 상속포기현황을 주기적으로 등기관서로 통보, 등기관서는 이를 토대로 직권으로 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위 상속등기를 말소한다면 사실상 취득자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하는데 따른 저해요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V. 맺는말

상속취득세의 경우 국세의 상속세와 비교하여 이중과세 논란 대상이 될 수 있겠으나 세부적으로 살펴볼 때 그 과세대상은 국세에 비하여 한정적이며, 국세의 경우 상속세에 대한 공제가 상당하다 볼 것이므로 지방세에서 그 공제되는 부분을 집어줄 필요성은 있다고 볼 것이다.

다른 취득행위와 달리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한번의 행위로 수개의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는 바, 그에 대한 세수를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전환된 10년이 지난 이 시점

에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여 최대한 세원누락을 방지하는 대안을 마련하고 지방세 운영상에 있어서도 자치단체별 통일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여 조세형평성을 기하고자 이에 대해 논의하였다. 

◀◀◀ 참고자료 ▶▶▶

1. 도서

- 가. 취득세에 있어서의 취득 개념에 관한 연구 ; 최원
- 나. 상속재산에 대한 효율적 지방세 관리 방안 ; 최진현
- 다. 2007 지방세 실무 ; 김의효
- 라. 2007 지방세 실무 해설 ; 전동훈

2. 인터넷 자료

- 가. <http://www.nanet.go.kr/> (국회도서관)
- 나. <http://www.moleg.go.kr/> (법제처)
- 다. <http://www.localtax.co.kr/> (한국지방세 연구회)
- 라. <http://www.kgdi.re.kr/> (한국자치발전 연구회)
- 마. <http://www.phillaw.co.kr/> (한길합동 법무사 사무소)

3. 기타

- 가. 상속운영에 관한 시·군별 회신